



인지세 납부 안내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(1)계약서[발코니확장]은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.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해당 인지세를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, 또한 추가선택품목(1)계약서[발코니확장]의 해당 인지세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,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※ 관련법령 「인지세법」 제1조,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8호
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(1)계약서[발코니확장]
납부기한	계약일(분양권전매-명의변경승인일)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
방문 발급	우체국,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온라인 발급	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■ 인지세 납부 안내

구분	분양계약서	발코니확장계약서(각각 납부)
인지세액	150,000원	20,000원
사업주체 부담액	75,000원	20,000원
분양계약자 부담액	75,000원	20,000원


※ 상기와 같이 분양계약자 부담액에 해당하는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를 발행하여야 합니다.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 방법 안내
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전자수입인지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④ 납부정보 입력

- 용도 : 인지세 납부
- 과세문서 종류 및 금액
- 1)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: 75,000원
- 2) 도급 또는 위임 : 20,000원
- 건수 : 각 1건 (총 2건)
- ※ 확인 후 결제



⑤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

